

의안번호	2217747
의 퇴 인	김도읍 의원
회 답 일	2026. 3. 31.
추 계 번호	26C1705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15조의17 (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)	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하게 하거나,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4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.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.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.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 교정직공무원 및 그 밖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5조의17 (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에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 교정직공무원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을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2025년 6월 말 기준 전국에 21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,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우선지원 또는 이용요금 감면을 적용하고 있음
 - 안 제15조의17제2항제1호~제9호에 명시된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 또는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는 현행법 시행령에 이미 해당 지원의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으나, 안 제15조의17제2항제10호에 명시된 “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”은 개정안에서만 명시된 대상자임

[표 1]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 또는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

현행법 시행령 별표2의2	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의17제2항
가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좌동(제3호)
나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좌동(제1호)
다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좌동(제2호)
라)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	좌동(제4호)
마)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	좌동(제5호)
바)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	좌동(제6호)
사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	좌동(제7호)
아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	좌동(제8호)
자)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	좌동(제9호)
—	(제10호)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 교정직 공무원 및 그 밖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
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신규로 이용요금 감면을 받을 위험 직무 종사 공무원의 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안 제15조의17제2항제10호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개

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실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사람의 수 등을 알 수 없음
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